

보도블럭 일부교체 공사사업자 선정 공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5조 및 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4조에 따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보도블럭 일부교체 공사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***** 아 래 *****

1. 사업개요

가. 계약기간 : 30일 이내

나. 용역내용 : 첨부자료 참조

* 교체위치 : 관리주체가 계약 이후 별도 지정

* 교체규격 및 수량 : I형 8T 회색(220*110) / 4,000장

* 교체기간 : 2026. 10. 19 ~ 2026. 10. 30

* 교체하는 보도블럭과 규사토는 발주자가 지급하며, 본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은 업체에서 구비 하여야 함.

2. 현장설명회

가.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, 필요 시 업체별로 개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현장 방문 일시 : 2026. 10. 06 10:00 ~ 15:00

3.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:

가. 입찰의 종류 : 일반경쟁

나. 낙찰의 방법 : 최저가낙찰제

4.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(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제출하고, 중복되는 서류는 한번만 제출 한다.)

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7조에 따른 서류

1) 입찰서 1부.(별지서식 사용)

2) 전문건설업(토목공사업, 포장공사업) 면허증 1부.

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4)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.

5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(전자발급 포함)

6) 산출내역서(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/자체서식 사용)1부.

7)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.

8)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

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.

9)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

-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확인서 1부.

나. 서식(별첨) : 입찰서

1) 제출방법 : k-apr 공동주택관리시스템으로 제출(www.k-apr.go.kr)

2) 마감기한 : 2026년 10월 12일

5. 개찰의 일시·장소

가. 개찰일시 : 2026년 10월 12일 10:00

나. 개찰장소 : 담당자 pc

6.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

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 제1항(참가자격의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

7.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,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

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[별표3]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.

나. 무효로 하는 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함(공문, 팩스, 전화, 문자 중 택일)

8. 입찰관련 유의사항(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)

가.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.

나.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, 변경 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,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.

다. 입찰가액은 “1.(사업개요)”를 완공할 수 있는 총금액(부가세 별도)으로 작성하고,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

라.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 후에 발주자의 준공검사 승인 후 지급함.

9.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.

나. 계약보증금 :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(공제증권 또는 보증서)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.(현금납부는 받지 않음)

다.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9조(계약체결)에 따른다.

10.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(공제증권 또는 보증서)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나. 입찰보증증권 발행용 사업자등록번호 : 413-82-60495
- 다.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.
- 라. 입찰보증금, 계약보증금,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는 받지 않음.
- 마.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31조(입찰보증금 등)에 따른다.

11. 선정지침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율

- 가.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%로하고,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별표4에 따라 2년으로 한다.
- 나. 하자보수보증금은 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에 따른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(하자보수보증증권 포함) 하여야 한다.

12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.
- 나.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에 따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(☎ 02-2249-8682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6년 09월 28일

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

[별첨1]

보도 블록 교체공사 시방서

1. 공사 범위 및 자재

1-1 공사의 범위

가. 공사명 : 단지내 파손된 보도블록 교체

나. 공사수량 : 3,000장

1-2 공사의 구분

가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00 일간

나. 준수사항.

- 모든 공사는 당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.
-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준한다.

1-3 자재

가. 보도블록

- I형 8T 회색(220*110)
- 보도블록과 규사토는 발주자가 지급한다
- 교체공사에 필요한 장비등은 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한다.
- 잡자재는 KS제품 및 규격품을 사용한다.

2. 시공 순서 및 방법

2.1 보도 블록의 설치

2.1.1 기존 보도블록의 철거

- ① 기존 보도블록을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거한다.
- ② 철거한 보도블록은 단지 외곽, 안전한 곳(국가에서 지정한 장소)에서 폐기한다.
- ③ 폐기 처리한 확인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.

2.1.2 기초 다짐

- ① 보도블록이 철거된 노면의 파편이나 굳은돌은 깨끗하게 정리한다.
- ② 지반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나 골재로 잘 다져진 경고한 지반일지라도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부분적으로 침하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.
- ③ 부분적으로 침하된 곳은 석재, 세자갈 등으로 잘 메우고 물을 뿌린 후 진동다짐기로 잘 다져서 지반을 굳건하게 한다.
- ④ 기초 지반이 정리된 위에 모래를 5cm의 두께로 복토하고 물을 뿌린 후 진동다짐 후 4cm가 되도록 하여 노면을 평탄하게 한다.

2.1.3 보도 블록 설치

- ① 안전층 위에 수평 및 평평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수평 실줄을 설치한다.
- ② 경계 블록 또는 측구부터 블록을 설치한다.
- ③ 블록간의 간격은 2mm가 되도록 설치한다.
- ④ 마무리 부분, 측구부분, 맨홀주변, 식재 주위 등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보기 좋게 시공 한다.
- ⑤ 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표면에 세사를 살포하여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인위 적으로 틈 새를 충전 시키며 진동기(compactor)로 4~5회 다짐을 한다.
- ⑥ 블록의 설치는 지형과 지물이 조화롭게 경사를 적절하게 하여 설치한다.

3. 유의 사항

- 가. 공사 개시 5일 이전에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(인사 및 재산)에 대하여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나. 공사 중 당 아파트 공유재산 및 입주자들의 개별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일체의 민, 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다.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현장 작업원이 입주자들에게 불손, 불편을 야기 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주민 생활에 방해되는 작업자가 있는 경우 “갑”의 교체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자를 교체해야 한다.
- 라. 공구 사용 시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마. 작업 현장을 항상 정리 정돈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.

4. 기타 사항

- 가. 시공업체는 계약 후 10일 이내 작업계획서(공사일정)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나. 시공업체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.
- 다.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당 관리소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한다.
- 라.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장소, 인원, 작업내용, 자재 불출사항 등을 기재한 일일공사 계획서를 공사 전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마. 화재, 도난, 소음방지, 위험물 등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.
- 바. 시공업체는 시공 중 당 아파트의 재산 및 입주자의 재산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, 당소는 그로 인한 일체의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끝.

별첨2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입찰서			
*참가번호		입찰명칭	
입찰가액	\		
입찰보증금	\		
위와 같이 입찰보증금(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)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. 년 월 일			
입찰자			
상호(성명)			
* 대표자	성명		
법인등록번호 (개인은 생년월일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주소(전화번호)			
			○○○○ 귀중
기재방법	*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.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